화약류 저장소 신청 안내 매뉴얼

– 화약안전처 –

특수법인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
Guns & Explosives Safety Technology Association

【 목 차 】

1. 화약류 저장소 개요 ····· 3

2. 화약류 저장소 기술검토/안전진단 신청 절차 ····· 3

3. 화약류 저장소 허가 절차 ····· 4

4. 화약류 저장소 기술검토/안전진단 구비서류 ····· 5

5. 화약류 저장소 기술검토/안전진단 신청시 주의사항 ··· 7

6. 화약류 저장소 시설기준 안내 ····· 8

7. 화약류 저장소 기술검토/안전진단 신청서 서식 ····· 14

○ 붙임.1 화약류 저장소 기술검토 신청서 ····· 15

○ 붙임.2 화약류 저장소 안전진단 신청서 ····· 16

1 화약류 저장소 개요

□ 관련 법령

○ 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, 제25조, 제43조

○ 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내지 제47항

○ 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 내지 37조, 제51조

□ 허가 대상

○ 화약류의 판매업을 하려는 자

○ 화약류저장소 설치자

○ 화약류저장소의 위치·구조·설비를 변경하려는 자

□ 허가 권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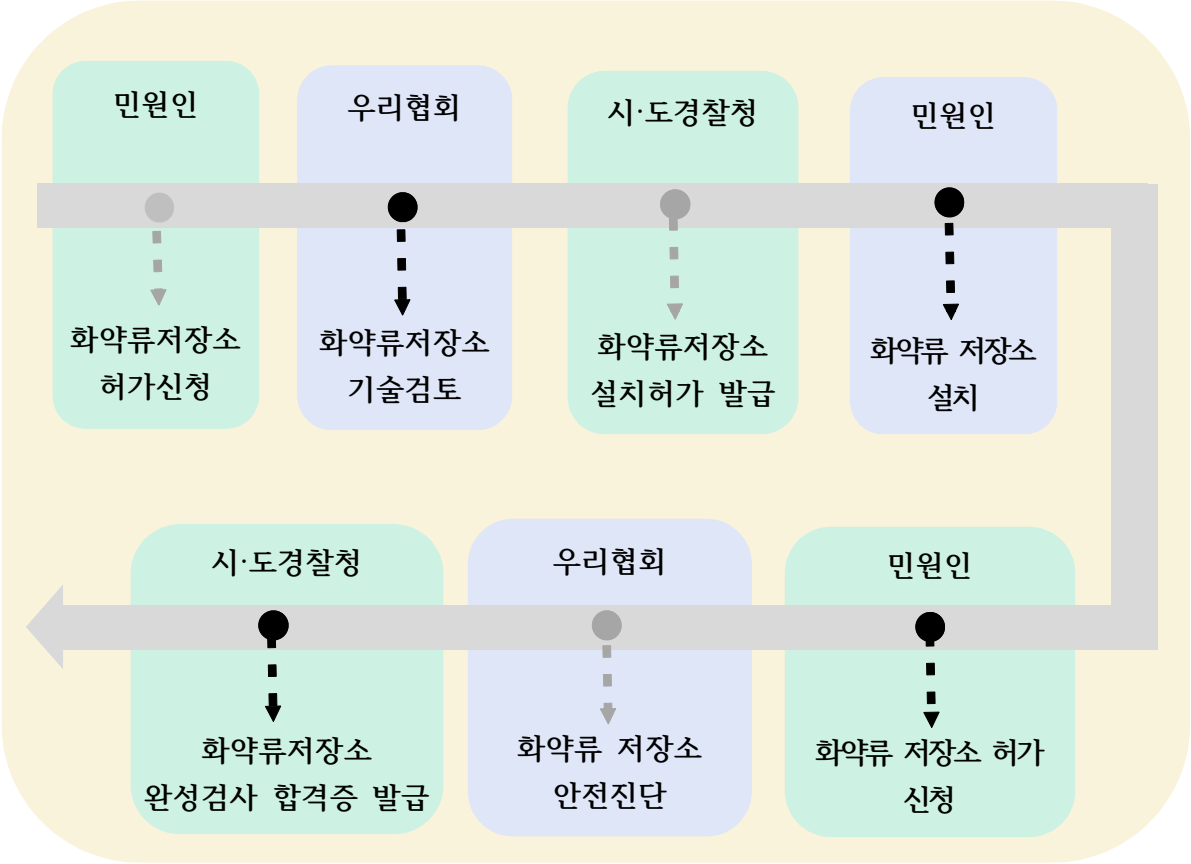
○ 시·도경찰청장 : 화약류의 판매업 허가

○ 소재지 관할 경찰서장 : 3급저장소 및 간이저장소 설치 허가

2 화약류 저장소 기술검토/안전진단 신청 절차



3 화약류 저장소 허가 절차



○ 협회 기술검토의견서 및 안전진단결과서는 허가신청 전 허가관청의 요구가 있는 경우 첨부

○ 제조업자 또는 화약류저장소설치자는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허가관청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, 그 검사에 합격한 후가 아니면 업무를 시작하거나 시설 또는 설비를 사용할 수 없음.

4 화약류 저장소 기술검토/안전진단 구비서류

□ 공통사항

○ 화약류 저장소 기술검토/안전진단 신청서 1부

- 의뢰자가 법인일 경우, 대표자, 회사명, 주소, 전화번호를 기재
- 전화번호는 연락 가능한 번호를 기재
- 의뢰 사유(목적)를 상세히 기재

  [예 : 신규 허가를 받기 위한 기술검토(안전진단)]
- 저장하고자 하는 화약류의 종류 및 포장 규격 등을 기재

※ 제출 도면상 이격거리가 법정 보안거리의 1.1배 이내일 경우 측량기사를 통한 실측 자료가 필요(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것)

※ 흙둑 설계시 흙둑의 침하 및 유실등을 고려하여 설치 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장함.

○ 보안물건 배치도(도면) 1부

- 도면은 도면상에서 측정이 가능하도록 작성할 것(예 : 1/1,200 축적도인 경우, 도면상에서 측량된 수치와 1,200을 곱한 값은 기재된 수치와 일치하여야 합니다)
- 설치 예정지로부터 법정 보안거리의 1.2배 이내에 존재하는 보안물건을 표시하고 실제 이격거리를 기재

○ 지적도 1부

- 저장소를 나타내는 지적도(발부일자가 신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것)
- 저장소의 부지 경계선을 표시할 것

○ 건물 배치도 1부

- 저장소, 경계울타리, 부속시설, 흙둑 등 포함
- 피뢰침 설치 위치 및 높이, 흙둑 정상선 등 포함
- 각 시설의 치수 및 시설 간의 간격 또는 거리를 표시(저장소 간 거리, 부속시설 간 거리, 기타 저장소 부속시설과의 이격거리 등)

- 자연지형을 이용하여 흙둑을 설치하는 경우 경계울타리 바깥으로 최소 5m 이상 표시
- 지적도 상의 경계와 저장소의 경계를 비교할 수 있도록 작성

○ 건물 단면도

- 저장소 건물(ex : 폭약고, 화공품 등)의 중심을 기준으로 십자선을 긋고, 그 십자선을 따라서 단면도를 작성할 것.
- 단면도상, 경계울타리내의 시설이 모두 포함될 것.
- 도면상 피뢰침은 보호범위내에 저장소 건물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단면도를 작성할 것.
- 자연지형을 이용하여 흙둑을 설치하는 경우 경계울타리 바깥으로 최소 5m 이상까지 포함하여 작성할 것.
- 도면상 각 시설의 높이·길이 시설간의 거리 등의 치수를 표시할 것.

○ 건물 설계도면

- 건물설계 도면은 기술검토시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, 안전진단 신청시에 제출할여야 함.
- 각 동마다 설계명세서 포함
- 평면도, 정면도, 단면도
- 건물 중심을 기준으로 십자선을 긋고, 그 십자선을 따라 단면도 작성
- 피뢰침의 보호 범위내에 해당 건물이 포함 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단면도 작성
- 각 시설의 높이·길이, 시설간의 거리 등의 치수 표시

○ 관련 허가증 1부

○ 사업자등록증(사본) 1부

○ 수수료 입금 확인증(사본) 1부

○ 기타

- 이 밖에 기술검토·안전진단 등 업무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,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5 화약류 저장소 기술검토/안전진단 신청시 주의사항

□ 신청서 작성 방법

○ 신청 구비서류는 전자파일로 제작(변환)할 것

○ 전자파일은 하나의 파일로 제작(변환)할 것

○ 담당자 및 연락처를 기재할 것

○ 페이지 수를 기재할 것(형식 : 현재 페이지 번호/전체 페이지 번호)

○ 전자파일은 e-mail(exp@gesta.or.kr)로 제출

□ 신청서 작성시 주의사항

○ 관련 법령 또는 허가관청의 지시 등으로 인해, 신청에 관한 내용은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음.

○ 보완서류를 요청하는 경우

- 첨부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
- 신청서 또는 구비서류의 내용이 미흡한 경우
- 기타 검토에 필요한 경우, 추가로 자료를 요구할 경우

○ 접수되지 않는 경우

- 수수료가 미납된 경우

○ 반려/취하/철회가 되는 경우

- 2회 보완서류 요청 후에도 신청 서류(구비서류 포함)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거나 내용이 미흡한 경우
- 반려, 취하 또는 철회가 되는 경우, 납부된 수수료 등은 일부만 반환될 수 있음.

6 화약류 저장소 시설기준 안내

□ 관련법령(시행령 제31조 내지 제40조)

가. 지상 1급저장소의 위치 · 구조 및 설비기준

1. 저장소는 건조한 지대에 설치하고, 기초는 견고히 하되, 지면보다 높게 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
2. 건물은 단층의 철근콘크리트조나 벽돌콘크리트블럭 또는 석조로 할 것
3. 저장소의 벽은 철근콘크리트블럭 또는 석조로 한 부분에 있어서는 두께 15센티미터이상, 벽돌콘크리트블럭 또는 석조로 한 부분에 있어서는 두께 20센티미터이상으로 할 것
4. 출입문은 2중문으로 하고 덧문에는 두께 3밀리미터이상의 철판으로 보강하되 2개이상의 자물쇠장치를 할 것
5. 창은 저장소의 규모에 따라 햇빛이 잘 들도록 저장소의 기초로부터 1.7미터이상의 높이로 하고 지름 1센티미터이상의 철봉을 10센티미터이하의 간격으로 설치하되, 안쪽에는 불투명한 유리를 사용한 미닫이식으로 하고, 바깥쪽에는 밖에서 쉽게 열지 못하게 덧문을 설치할 것
6. 마루는 기초에서 30센티미터이상의 높이로 하고, 마루대신에 바닥을 콘크리트로 하는 경우에는 그 위에 마찰로 인한 충격을 방지할 수 있는 완충재를 깔아야 하며, 마루밑 또는 콘크리트 바닥옆에는 저장소 크기에 따라 철망을 친 3개이상의 환기통(폭 20센티미터이상인 때에는 약 5센티미터의 간격으로 지름 1센티미터이상의 철봉을 끼운 것)을 설치할 것
7. 저장소의 내부는 판자로 하고, 마루표면 또는 콘크리트 바닥에는 철물류가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할 것
8. 저장소의 천정위에는 외부의 공기가 잘 통할 수 있도록 적당한 곳에 환기통을 1개이상 설치할 것
9. 저장소에 난방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온수 또는 열기의 것을 사용할 것
10. 저장소 안에는 조명장치를 하지 아니할 것
11. 지붕은 금속ㆍ스레트 또는 기와등 불에 타지 아니하는 재료로 하되, 도난 및 화재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
12. 저장소에는 피뢰장치를 할 것
13. 저장소의 주위에는 흙둑을 쌓을 것
14. 저장소의 흙둑 바깥면으로부터 2미터이상의 빈터를 두어 화재시에 연소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경계울타리를 설치할 것
15. 경계울타리안에는 저수통과 경계판을 갖출 것

16. 저장소의 바깥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야간에 전등을 켜고 도난방지를 위한 비상벨 등의 장치를 할 것

나. 지상 복토식 1급저장소의 위치 · 구조 및 설비기준

1. 저장소의 벽은 2중으로 하고, 바깥쪽 벽은 두께 20센티미터이상의 철근콘크리트로 하되, 안쪽 벽과 바깥쪽 벽과의 간격은 20센티미터이상으로 하며, 습기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할 것
2. 저장소의 안쪽 벽과 바깥쪽 벽과의 공간에 습기가 차지 아니하도록 배수설비를 할 것
3. 마루는 기초에서 30센티미터이상의 높이로 하고, 마루 대신에 바닥을 콘크리트로 하는 경우에는 그 위에 마찰로 인한 충격을 방지할 수 있는 완충재를 깔아야 하며, 마루밑 또는 콘크리트 바닥옆과 천정에는 각각 1개 이상의 환기통(폭이 20센티미터 이상인 때에는 약 5센티미터 간격으로 지름 1센티미터 이상의 철봉을 끼워넣어야 한다)을 설치할 것
4. 저장소의 복토(출입구쪽의 부분을 제외한다)는 45도이하의 경사로 하고, 복토의 두께는 3미터이상으로 할 것
5. 저장소의 복토는 돌이 섞이지 아니한 흙으로 하고 필요한 때에는 잔디를 입힐 것
6. 제31조 제4호·제7호·제9호·제12호·제14호 및 제16호,제33조 제6호및제7호의 규정은 지상복토식 1급저장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

다. 지하 1급저장소의 위치 · 구조 및 설비기준

1. 저장소는 지반이 견고하고 폭발하여도 부근의 갱내시설 및 종업원등에 위해가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
2. 저장소는 철근콘크리트등의 견고하고 습기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. 다만, 암질에 따라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멘트모르타르를 사용하고 판자로 된 2중벽의 구조로 할 수 있다.
3.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판자로 된 2중벽을 설치하는 때에는 바깥쪽 벽과 안쪽 벽과의 사이에 습기가 차지 아니하도록 배수 설비를 할 것
4. 출입문은 2중문으로 하고 덧문은 철문으로 하되 2개이상의 자물쇠장치를 할 것
5. 저장소의 지반의 두께는별표 10의 기준에 의할 것
6. 저장소의 입구 또는 저장소로 통하는 터널의 입구앞 5미터이내에는 흙둑을 쌓는 등 폭발하여도 직접적인 충동파의 영향을 받을 염려가 없도록 할 것

7. 저장소 내부를 조명하는 설비를 하는 때에는 방폭식의 전등으로 하고, 배선은 금속관 기타의 케이블시공등으로 전선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며, 자동차단기 또는 스위치는 저장소의 바깥에 설치할 것
8.제31조 제7호및제16호의 규정은 지하에 설치하는 1급저장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

라. 2급저장소의 위치 · 구조 및 설비기준

1. 저장소는 건조한 지대에 설치하고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
2. 건물은 벽돌조이상의 견고한 단층건물로 할 것
3. 출입문은 2중문으로 하고 덧문에는 두께 2밀리미터이상의 철판으로 보강하고 2개이상의 자물쇠장치를 할 것
4. 햇빛이 잘 들도록 2개 이상의 창을 설치하되, 저장소의 기초로부터 1.7미터이상의 높이에 두고 지름 1센티미터이상의 철봉을 10센티미터 간격으로 설치하며 바깥쪽에서 쉽게 열지 못하게 덧문을 설치할 것
5. 저장소의 내부는 판자등 정전기 및 충격을 방지할 수 있는 재료로 하고 마루표면 또는 콘크리트 바닥에는 철물류가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할 것
6. 저장소에 난방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온수를 사용하여 난방하도록 할 것
7. 저장소 내부에 조명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방폭식의 전등으로 하고 배선은 금속관 기타의 케이블시공등으로 전선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며 자동차단기 또는 스위치는 저장소의 바깥에 설치할 것
8. 저장소 지붕의 내부는 폭발시 가볍게 날려 흩어질 수 있는 목재 등의 경량재를, 외부는 금속ㆍ스레트ㆍ기와등의 불연재를 사용하고, 천정속에 철망을 칠 것
9. 저장소에는 피뢰장치를 할 것
10. 저장소 주위에는 흙둑을 쌓을 것
11. 저장소의 흙둑 바깥면으로부터 2미터이상의 빈터를 두어 화재시에 연소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할 것
12. 빈터 외부에 경계울타리를 두고 그 안에 저수통과 경계판을 갖출 것
13. 저장소의 바깥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야간에 전등을 켤 수 있도록 하고 도난방지를 위한 비상벨등의 장치를 할 것

※ 지하에 설치하는 2급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도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
2. 안쪽 벽은 철근콘크리트로 할 것. 다만, 암질에 따라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멘트모르타르로 하거나 판자로 할 수 있다
3. 언덕의 경사면 또는 터널 안쪽 벽에 홈을 파고 저장소를 설치할 때에는 그 저장소의 안쪽 벽을 콘크리트 또는 나무의 이중판자로 할 것

4.제31조 제7호및제16호,제33조 제7호및별표 8의 규정은 지하에 설치하는 2급저장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

마. 3급저장소의 위치 · 구조 및 설비기준

1. 저장소의 벽(앞면의 벽을 제외한다)은 두께 20센티미터이상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두께 30센티미터이상의 보강시멘트블록으로 하고, 앞면의 벽은 두께 10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로 할 것
2. 지붕은 철망골 시멘트모르타르로 하는 등 폭발한 때에 가볍게 날리어 흩어질 수 있는 건축자재로 할 것
3. 화약 또는 폭약과 화공품을 동시에 저장하기 위한 격벽의 기초는 저장소의 기초에 두께 10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로 하고, 격벽은 두께 30센티미터이상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두께 40센티미터 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으로 할 것
4. 출입구는 부근의 보안물건을 고려하여 위험의 염려가 없는 쪽에 설치하고, 저장소의 바깥에는 포말소화기등의 소화시설을 갖출 것
5. 저장소의 주위에는 흙둑 또는 간이흙둑을 설치할 것
6. 제31조 제4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은 지상에 설치하는 3급저장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

※ 지하에 설치하는 3급저장소의 위치、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지하저장소의 윗 지반의 두께가 60센티미터이상인 곳에 설치할 것
2. 주택 그 밖의 건축물의 지하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것
3. 제31조 제7호 및 제16호, 제33조 제1호 내지 제4호、제6호 및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지하에 설치하는 3급저장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

바. 수중저장소의 위치 · 구조 및 설비기준

1. 저장소의 기초 또는 벽은 두께 15센티미터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로 하고,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방수처리를 할 것
2. 지붕은 철망골 시멘트모르타르로 하는 등 내화성이 있는 재료로 하며, 도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
3. 수위계와 자동흡수장치를 설치할 것
4. 물이 넘어서 흘러 빠질 수 있는 배수구를 설치하고, 배수구에는 침전통을 설치하는 등 화약류가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

사. 실탄저장소의 위치 · 구조 및 설비기준

1. 저장소의 벽은 철근콘크리트로 하는 때에는 두께 20센티미터이상, 벽돌·콘크리트블록 또는 석조로 하는 때에는 30센티미터이상으로 할 것
2. 지붕은 두께 20센티미터이상의 철근콘크리트로 할 것
3. 제31조 제1호·제2호·제4호내지 제10호·제12호·제14호 및 제16호의 규정은 실탄저장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

아. 꽃불류저장소의 위치 · 구조 및 설비기준

1. 단층 콘크리트블록조로 하고, 기초는 지면보다 높게 하되, 견고하고 배수가 잘되도록 할 것
2. 저장소 벽의 두께는 콘크리트조인 때에는 10센티미터 이상, 보강콘크리트블록인 때에는 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
3. 저장소의 마루밑에는 지상1급저장소에 준하는 환기통을 저장소의 크기에 따라 2개이상 설치할 것
4. 저장소 주위에는 흙둑·간이흙둑 또는 방폭벽을 설치할 것
5. 제31조 제1호·제4호·제7호·제8호·제11호 및 제12호의 규정은 꽃불류저장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

자. 장난감용 꽃불류저장소의 위치 · 구조 및 설비기준

1. 저장소는 건조한 지대에 설치할 것
2. 구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층으로 하고, 지붕과 벽은 철망골 시멘트모르타르로 하거나 진회 또는 내화성 도료를 바를 것
3. 출입문은 2중의 자물쇠장치를 하는 등 도난을 방지할 수 있는 설비를 할 것

차. 간이저장소의 위치 · 구조 및 설비기준

1. 벽과 천정(2층이상의 건물인 경우에는 그 층의 바닥을 포함한다)의 두께는 10센티미터이상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20센티미터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로 할 것
2. 지붕은 10센티미터이상의 철근콘크리트로 할 것
3. 출입문은 두께 1밀리미터이상의 철판을 사용한 철제로 할 것
4. 자동소화설비를 갖출 것

7 화약류 저장소 기술검토/안전진단 신청서 서식

※ 자세한 관련 서식은 협회 홈페이지(자료마당-서식자료-화약검사) 참조
https://www.gesta.or.kr/data/powder_list.php?kind=application_powder&kind_sub=list

□ 붙임 1. 화약류 저장소 기술검토 신청서

□ 붙임 2. 화약류 저장소 안전진단 신청서

붙임 1. 화약류 저장소 기술검토 신청서

<table>
<tr><td colspan="3" rowspan="4">화약류 저장소
기술 검토 신청서</td><td>선결</td><td>이사장</td><td></td><td>지시</td><td colspan="3">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접수</td><td>일 자</td><td></td><td rowspan="4">결재·공람</td><td>이사</td><td colspan="2"></td></tr>
<tr><td>번 호</td><td></td><td>처장</td><td colspan="2">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처리부서</td><td>화약안전처</td><td></td><td colspan="2">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담 당 자</td><td></td><td></td><td colspan="2">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① 신 청 인/
회 사 명</td><td>성 명/
(명칭)</td><td colspan="7">전화번호: fax:</td></tr>
<tr><td>주 소</td><td colspan="7">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② 저장소형식
및 동수</td><td colspan="2"></td><td>③ 안전시설
(흙둑 등)</td><td colspan="3">☐별표 8(저장소 지붕 높이)
☐별표 9(지붕 높이의 5/4 이상)
☐기타 ( )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④ 화약류의
종류 및 수량</td><td colspan="7">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⑤ 위 치</td><td colspan="7">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⑥ 허가 사항</td><td colspan="7">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⑦ 기 타
(의뢰사유)</td><td colspan="7"></td></tr>
<tr><td colspan="9">위와 같이 화약류 저장소 기술 검토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㊞

특수법인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이사장 귀하</td></tr>
</table>

※ 구비 서류

1. 도면(보안물건 배치도, 지적도, 건물배치도면, 단면도, 건물설계도면, 각 1부)
   ※ 도면에 관한 내용은 “홈페이지 신청서 작성방법 및 구비서류에 관한 설명” 참조
2. 관련 허가증 각 1부(사본)
3. 입금 확인서 1부(사본)
   가. 계좌은행 : 하 나 은 행　　나. 계좌번호 : 168-910004-01104
   다. 계 좌 명 :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　　라. 금　　액 : 1,155,000원(부가세 포함)
4. 기타(기술 검토에 필요한 서류 등)

붙임 2. 화약류 저장소 안전진단 신청서

<table>
<tr><td colspan="3" rowspan="4">화약류 저장소
안전진단 신청서</td><td rowspan="2">선
결</td><td>이사장</td><td></td><td rowspan="2">지
시</td><td colspan="2" rowspan="2">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접
수</td><td>일 자</td><td></td></tr>
<tr><td>번 호</td><td></td><td rowspan="3">결
재
·
공
람</td><td>이사</td><td>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처리부서</td><td>화약안전처</td><td>처장</td><td>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담 당 자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① 신 청 인/
회 사 명</td><td>성 명/
(명칭)</td><td colspan="6">전화번호: fax:</td></tr>
<tr><td>주 소</td><td colspan="6">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② 저장소형식
및 동수</td><td colspan="2"></td><td>③ 안전시설
(흙둑 등)</td><td colspan="3">□별표 8(저장소 지붕 높이)
□별표 9(지붕 높이의 5/4 이상)
□기타 ( )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④ 화약류의
종류 및 수량</td><td colspan="6">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⑤ 위 치</td><td colspan="6">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⑥ 허가 사항</td><td colspan="6">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⑦ 기 타
(의뢰사유)</td><td colspan="6"></td></tr>
<tr><td colspan="8">위와 같이 화약류 저장소 안전진단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㊞

특수법인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이사장 귀하</td></tr>
</table>

※ 구비 서류

1. 도면(보안물건 배치도, 지적도, 건물배치도면, 단면도, 건물설계도면, 각 1부)
   ※ 도면에 관한 내용은 “홈페이지 신청서 작성방법 및 구비서류에 관한 설명” 참조
2. 관련 허가증 각 1부(사본)
3. 입금 확인서1부(사본)
   가. 계좌은행 : 하 나 은 행　　나. 계좌번호 : 168-910004-01104
   다. 계 좌 명 :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　　라. 금 액 : 1,155,000원(부가세 포함)
4. 기타(안전진단에 필요한 서류 등)